- (바) "운반위치"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작업위치로 이동된 상태에서의 작업대 위치를 말한다.
- (사) "전복선"이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전복모멘트에 의하여 전도될 수 있는 수직의 기준선을 말한다.
- (아) "정격하중"이라 함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,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.
- (자) "적재위치"라 함은 연장구조물 및 안정기가 하강 또는 수축되어 있는 고소 작업대의 상태로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종류

- (1) 고소작업대의 무게중심 및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(가)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
    - ① A 그룹: 적재화물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 안에 있는 고 소작업대
    - ② B 그룹: 적재화물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
  - (나)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
    - ① 제1종: 적재위치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
    - ② 제2종: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
    - ③ 제3종: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